

## 제천시인명피해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

의 안 번 호	1037
-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 10 . . .  
제 출 자 : 제 천 시 장

### 1. 제·안 이 유

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( 법률 제7188호 2004. 3.11)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시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충청북도 자연재난에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에의거 제천시인명피해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·운영코져 함

### 2. 주 요 내 용

-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
- 인명피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의 정립
- 인명피해심의위원회의 임기 및 의사 진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 명문화
- 관계기관의 자료 및 의견제출에 관한사항을 규정
- 기타 인명피해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

### 3. 근 거 법령

-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(법률 제7188호 2004. 3. 11제정)
-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규정(2004. 7. 24 일부개정)

### 4. 의 안 전 문 : 불 입

### 5. 신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
- 첨 부 : 1. 기타참고자료(법령등) 사본 1부  
           2. 입법예고 사본 1부

## 제천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심의, 결정하기 위한 제천시인명피해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위원회의 기능)** 위원회는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분석과 함께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결정한다.

**제3조(위원회의 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사회적으로 저명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나 민간단체 임원급 또는 자연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하여 3~4인을 위촉하고 당연직 6~7명은 제천시 관련 실·과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재난안전관리과 복구지원담당이 한다.

**제4조(위원의 임기)**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

1. 품위손상,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3.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

**제5조(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시 위원장이 소집하며, 최종보고(자연재난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)전까지 개최하여 인명피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**제6조(위원의 제척)** 위원회는 제5조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결정 시 위원의 직계존비속이 인명 피해 여부 심의대상자인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 결에서 위원을 제척 할 수 있다

**제7조(관계기관의 협조요청)** 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또는 참고인 출석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과 관련이 있는 기관·단체 참고인은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또는 진술요청을 받았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수당)**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

**제9조(회의록의 비치)**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일시, 장소, 출석위원과 관계인, 안건,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10조(회의결과의 통보)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관계기관 단체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 관 계 법령 발췌

## ○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(법률 제7188호 2004. 3. 11제정)

제3조 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재난"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.
  - 가. 태풍·홍수·호우(호우)·폭풍·해일(해일)·폭설·가뭄·지진·황사(황사)  
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  - 나.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 
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
  - 다. 에너지·통신·교통·금융·의료·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 
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

제66조 (국고보조 등) ① 국가는 재난관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(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포함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. 다만, 제39조제1항(제46조제1항의 시·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·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,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중 시·도 및 시·군·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.  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재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이재민의 구호
2.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
3. 농림어업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
4. 정부양곡의 무상지급
5.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사항

## ○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 (대통령령 제18480호 2004. 7. 24 일부개정)

제2조(재난복구비용등의 부담기준) ①법 제66조(국고보조 등)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또는 의연금등을 지원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

1. 이재민의 규호를 위한 다음 각목의 지원
  - 가.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부상을 당한 자에 대한 위로 및 생계보조
  - 나. 주택이나 주 생계 수단인 농업·어업·임업·염생산업이 재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 및 생계지원과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
  - 다. 영농·영어·영림·양축·염생산 자금의 상환연기와 그 이자의 감면 지방세 등의 조세감면 등 간접지원

## ○ 지방자치법(법률 제7410호 2005. 3. 24 일부개정)

제15조 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 ○ 지방자치법 시행령 (대통령령 제18161호 2004. 12. 18 일부개정)

제42조 (자문기관의 설치)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조언·권고·건의·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·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 입법예고

제천시 공고 제 2005 - 502호

제천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조례 제정의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5년 8월 12일

제 천 시 장

### 제천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안 입법예고

#### 1. 조례명 : 제천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

#### 2. 제정이유

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분석과 객관적인 심의을 위하여 제천시인명피해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·운영코져 함

#### 3. 주요내용

-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
- 인명피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의 정립
- 인명피해심의위원회의 임기 및 의사 진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 명문화
- 관계기관의 자료 및 의견제출에 관한사항을 규정
- 기타 인명피해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

#### 4. 의견제출

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5년 9월 1 일까지 제천시장(참조 재난안전관리과)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연락처 ☎ 640-5201~5202 FAX 640-5169 E-mail:jogh04@hanmail.net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이유)
 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  - 기타 참고사항 등